

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 
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12 월 8 일

여 수 시 장 김기영



여수시 조례 제2274호

붙임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274호

##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성폭력 피해자”를 “성폭력 피해자와 「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14조(특별휴가) ① ~ ⑬ (생략)</p> <p>⑭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및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<u>성폭력 피해자</u>는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단, 이 경우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14조(특별휴가) ① ~ ⑬ (현행과 같음)</p> <p>⑭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 <u>성폭력피해자와 「여수시의 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</u> ----- . ----- 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